

“오산세교 한신더휴” 당첨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계약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류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0)이후 발행본에 한합니다.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2024. 05. 28(화) 조회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예약기간	2024.05.28(화) ~ 2024.06.08(토) / 10:00 ~ 16:00
	예약방법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서류접수일정	2024.05.30(목) ~ 2024.06.08(토) / 10:00 ~ 16:00(입장기준)
정당계약기간		2024.06.10(월) ~ 2024.06.14(금) 5일간 / 10:00 ~ 17:00

- ※ 견본주택에서는 당첨 동·호수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지 않으니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장 시 당첨자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유형에 따른 검수시간이 상이하여 다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사전서류 미접수자는 정당계약 시 자격검증 절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추가서류 검증절차로 계약서 불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서류접수기간내 자격검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분양 완료 후 파기합니다.

■ 일반(가점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안내
필수 서류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가점산정표	-	건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여권제외) 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신청 및 계약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여부 확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배우자 제외)	본인	1순위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급)
추가 (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제외)	세대원	해외장기체류여부, 1순위 자격요건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확인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추가로 가점 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양가족 산정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 관계 포함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거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생업사정 인정불가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포함)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되지 않음
대리인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용도 : 대리인위임용(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불가)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기제(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기제(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추첨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안내
필수 서류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여권제외) 등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신청 및 계약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부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배우자 제외)	본인	1순위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급)
추가 (해당자)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25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표등본(전부포함)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영업사정 인정불가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영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배우자포함)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되지 않음
대리인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대리인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도장(서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임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